

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(안) 심 사 보 고 서

2004. 7. 8.
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4년 6월 23일 영등포구청장 제출
- 나. 회 부 일 자 : 2004년 7월 1일 회부
- 다. 상 정 일 자 : 제105회(정례회) 제2차 행정위원회(2004년 7월 5일) 재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행정국장 정진)

가. 제안이유

- 크로바아파트 재건축사업으로 신축중인 아파트의 사업구역이 영등포3동(영등포동8가)과 당산2동(당산동)의 경계에 건축중에 있어, 사업완료 후 주민생활 편의증진 및 행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사업지역내 당산동 지역을 영등포동8가로 경계변경을 추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당산동 121의 169번지, 121의 172번지, 121의 194번지, 121의 195번지, 121의 196번지, 121의 197번지, 121의 302번지, 171의 3번지 이상 총 8필지를 영등포동8가에 편입함.

다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지방자치법 제4조
 -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 관한규칙 제9조의2
- 본 안건은 제1차 행정위원회(2004년 7월 2일)에서 보류되어 제2차 행정위원회(2004년 7월 5일)에 재상정하여 의결함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박창수)

- 사업시행자가 행정구역변경을 신청한 사항으로 해당 동에서 동의하고 서울시부터 동간 경계변경이 승인되었으며,
- 재건축 이전에 모든 세대가 영등포3동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 편입이 되어도 세대와 인구의 증감 없이 면적만 증가되는 사항으로 주민의 편의증진과 행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당산2동 관할구역 8필지 5,506㎡를 영등포3동으로 행정구역의 변경이 필요하다 사료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